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 제정 : 1997.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의 개선방향을 심의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교과 과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연구와 조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은 교무연구처장,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이 된다.

③ 교무연구처장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수업과에서 관장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